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Question

저는 39세의 여자로서 甲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사고발생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라고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8조, 제48조, 민법 제750조)



공정증서의 효력

Question

돈을 빌려줄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공정증서는 강한 증거가 되며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인데 통상의 사서증서와는 다른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높다는 점과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사후 분쟁의 우려가 없어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효력을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증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집행인락문언이 기재되므로 판결문정본의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용도

Question

내용증명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증거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고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